

개호보험제도 개정의 포인트 < 2021 년도 >

2021 년 4 월부터

- 65 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 단계를 판정하는 기준이 일부 바뀌었습니다

보험료 단계 중 7 단계와 8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소득금액이 210 만엔 , 8 단계와 9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소득금액이 320 만엔이 되었습니다 .

또 , 보험료 단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, 합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장기양도소득 관련 특별공제액에 저미이용 토지 등을 양도했을 경우의 특별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.

2021 년 8 월부터

- 시설서비스나 단기입소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자의 식비·거주비 (체재비) 의 이용자 부담 단계 구분 , 식비의 부담한도액 및 예저금 등의 자산 요건이 일부 바뀝니다 .

시설서비스나 단기입소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자의 경우 , 신청하여 인정받으면 식비·거주비 (체재비) 가 소득 등의 단계 (제 1 단계부터 제 3 단계까지) 에 따라 부담한도액까지 지불하는 부담경감제도가 있습니다만 , 8 월부터 이용자 부담 단계의 제 3 단계가 세분화됩니다 . 또 , 식비의 부담한도액과 부담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의 자산 요건 (예저금 등의 금액) 이 일부 바뀝니다 .

- 개호서비스의 이용자 부담 상한액이 일부 바뀝니다 .

1 개월의 개호서비스 이용자 부담의 경우 ,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일정 상한액까지 부담하고 ,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「 고액개호서비스비 」 로서 보험급부가 지급됩니다만 , 8 월부터 현역 동등 수준의 소득에 상당하는 분의 부담상한액 구분이 세분화되어 상한액이 일부 바뀝니다 (11 페이지 참조) .